

## 변경대비표

### 1. 대상약관

-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

2.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### 4. 변경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<b>제 12 조(약관의 변경 등)</b>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</p> <p>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</p>	<p><b>제 12 조(약관의 변경 등)</b>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</p> <p>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</p>	

<p>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⑤ &lt;생략&gt;</p>	<p>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 (제 1 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전)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⑤ &lt;생략&gt;&lt;기존과 동일&gt;</p>	
<p>(신설)</p>	<p>&lt;부칙&gt;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p>	